



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참고

※ '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'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며,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유의사항

- 당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대량 신고하여 계약자 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거짓 작성 또는 미제출 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, 거래신고필증이 미발급되고 추후 신고필증 미지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시고 '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' 주택 공급계약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아래 항목에 따라 전체 분양금액에 대한 계약자의 주택취득 자금조달 방식을 결정하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항목		상세항목	세부내역
자금 조달 계획 ①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
	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
			이에 준하는 자금
		④ 증여·상속 등	가족 등 증여·상속
		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
	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	보유중인 현금
	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
	차입금 등		이에 준하는 자금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
			기존 보증(전세)금
			중전부동산 권리가액
			이에 준하는 자금
		⑦ 소계	②+③+④+⑤+⑥을 모두 합한 금액
		⑧ 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
			신용대출
			그 밖의 대출
		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
		⑨ 임대보증금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
			신규 임대차 계약
		⑩ 회사지원금·사채	법인/개인 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
		⑪ 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
		⑫ 소계	⑧+⑨+⑩+⑪을 모두 합한 금액
		⑬ 합계	⑦+⑫를 모두 합한 금액
자금지급 방식 ⑭	⑮ 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 지급 방식	증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기존 대출금·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·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
입주계획 ⑱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 입주	본인 외 가족이 입주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(ex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SAMPLE

※ 반드시 연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계약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계약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		계약자 주민등록번호		
				(휴대)전화번호	계약자 전화번호	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	
		본인 명의의 예금(적금) 등 원		본인 명의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		
		④ 증여·상속	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		
	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 받아 조달하는 자금 원		보유 현금 및 보험, 펀드 등 그 밖의 자산의 합 원		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 : 제공자와의 관계)		[] 보유 현금			
	[] 그 밖의 관계(제공자와의 관계)		[] 그 밖의 자산(종류 : ex) 미래소득, 금융상품, 펀드, 보험해지금 등)			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소유 부동산 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, 재건축/재개발 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원		⑦ 소계		[②+③+④+⑤+⑥]의 총 금액 원	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	주택담보대출	'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' 주택담보대출 실행금(잔금대출) 원	
		주택담보대출 + 신용대출 + 그 밖의 대출의 합계 원		신용대출	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금액 원	
				그 밖의 대출	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금액 원 (대출 종류 :)	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	'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' 외 주택 중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		
		⑨ 임대보증금		해당없음 원		⑩ 회사지원금·사채
⑪ 그 밖의 차입금	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원		⑪ 소계	[⑧+⑨+⑩+⑪]의 총 금액 원	
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 : 제공자와의 관계)			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	
[] 그 밖의 관계(제공자와의 관계)						
⑬ 합계		[⑦+⑫] 합계 (계약하는 세대의 분양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용의 총금액과 동일해야함) 원		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	⑬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액 원			
	⑮ 계좌이체 금액		중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 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원 (⑬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액)		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	해당없음 원		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해당없음 원			
	지급 사유 ()				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	[] 임대 (전·월세)	해당없음 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날짜 작성 생략 년 월 일

제출인 계약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시흥시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- 2.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3.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			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원
		④ 증여·상속	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	원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 :) [] 그 밖의 관계()		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(종류 :)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	원	⑦ 소계	원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원	주택담보대출	원
			신용대출	원	
			그 밖의 대출	(대출 종류 :) 원	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		
		⑨ 임대보증금	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	원
		⑪ 그 밖의 차입금	원	⑫ 소계	원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 :) [] 그 밖의 관계()				
	⑬ 합계	원	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	원		
	⑮ 계좌이체 금액		원	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	원	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원		
	지급 사유 ()			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	[] 임대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시흥시장 귀하

유의사항

-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